

#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- 검토 보고 -

### 제안이유
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임

### 주요골자

-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“국외여비지급기준표”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2)

###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)
- 지방자치법시행령 「별표8」 “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”의비고2
- 공무원여비규정 「별표4」 “국외여비정책표”

###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1월7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외 여비 정액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주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